

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08. 10. 01 개정 2013. 03. 01
개정 2014. 03. 31 개정 2015. 04. 07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의 규정 및 경동대학교 학칙 제54조의2에 의한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든 학부와 학과에 적용된다.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양교직과정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3. 3. 1, 개정 2014. 3. 31, 개정 2015. 4. 7)

③ 사범계학과(부)장 및 교직과정 운영학과(부)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3. 3. 1, 개정 2014. 3. 31, 개정 2015. 4. 7)

④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교양교육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13. 3. 1, 개정 2015. 4. 7)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
3.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
4. 교육실습 계획 수립
5.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, 이수 방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교원자격 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직교육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5. 4. 7)

제6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(개정 2015. 4. 7)

제7조 (수당지급) 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